

헌장 검토

2005년 7월

www.nyc.gov/charter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

의장이 전하는 메시지



지난호가 간행된 이후, 위원회는 *헌장 개정*에 관한 예비 권장안에 대해 6월 15일, 6월 22일, 6월 27일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편지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견해를 수집함으로써 적극적인 공공 토론에 관한 위원회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월에 추진된 시정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 및 광범위한 시민 토론에서도 사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일련의 공청회에 앞서 열린 7월 5일의 첫 공개 회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된 권장안을 개정하여 그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합의의 도달을 위하여 폭넓은 견해와 선택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토의하고, 8월 1일과 2일에 예정된 두차례의 공개 회의에서 최종 권장안을 채택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장 개정 과정을 통한 시정부 개선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2005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 시민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수년간 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Ester Fuchs, Ph.D.
의장

위원회 공개 회의 일정

8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

뉴욕시 경제개발사업부, 4층 회의실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Manhattan

8월 2일

화요일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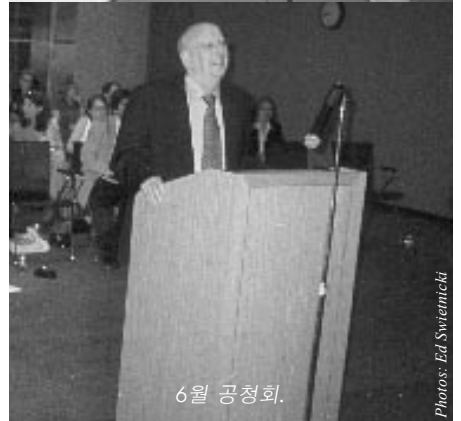
뉴욕시 경제개발사업부, 4층 회의실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Manhattan

상기 회의는 공청회가 아닌 공개 회의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참관은 가능하나 증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회의에서의 구두 및 수화 통역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공개 회의 개최 5일전(공휴일제외) 위원회 직원 Brian Geller에게 전화 (212) 788-2952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TDD 사용자는 Verizon Relay Services로 전화하십시오.

Ester R. Fuchs, 의장
Dall Forsythe, 부의장
Stephen J. Fiala, 서기

Robert Abrams
Curtis L. Archer
Lilliam Barrios-Paoli
Amalia V. Betanzos
David Chen
Anthony Crowell
Stanley E. Grayson
Mary McCormick
Stephanie Palmer
Jennifer Raab



6월 공청회.

Photos: Ed Swietnicki

헌장 검토

시민 의견의 수렴

6월 9일에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는, 권장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6월 10일에 개최된 **헌장 개정을 위한 예비 권장안**에 설명된 바와 같이 3가지 헌장 개정에 관한 예비 권장안을 승인하였습니다. 6월 15일, 6월 22일, 6월 27일 개최된 일련의 공청회에서 위원회는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들 공청회에 잇달아 개최된 7월 5일 첫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정 의견의 반영과 일반적 합의 도달을 위하여 제안된 권장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헌장에서 재정 관리 도구 수용.

3월 전문가 포럼이 열린 이래, 위원회는 뉴욕시가 현재 헌장에 포함되지 않은 주정부 재정 위기 법안(FEA)의 효율적인 일부 재정 기획 관행을 수용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재정의 안정에 필수적인 건전한 재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효력상실을 앞둔 FEA의 주요 법안을 뉴욕시가 헌장에 영구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FEA 주요 법안의 효력상실에 앞서 주차원의 토론이 예상되기는 하나, 위원회는 뉴욕시가 건설적인 재정 기획 및 관리 도구로 인정되는 이들 법안을 지금 헌장에 포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FEA 법안을 수용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3월에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6월에 개최된 일련의 공청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월간 보고 관례를 없앴으로써, 효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FEA를 비롯한 헌장 및 주정부 법이 허용하는 재정 정보에 대한 현재의 검색 권한이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법규 내에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시정부가 적자없이 회계연도를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뉴욕시 감사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감사관 및 행정 관리 예산국(OMB)이 영구 법전화 과정에서 지나

치게 세부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특정 항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헌장 개정을 통하여 뉴욕시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 GAAP에 부합되는 보고 방식으로 운영 적자 없이 매 회계연도를 마감하도록 한다.
- 4개년 재정 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매해 분기별 수정 과정을 거친다.
- 일반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를 해마다 시행한다.
- 단기 부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둔다.

행정 재판관의 윤리강령.

전문가 포럼에서는 행정법 재판관, 청문회 간부 및 행정 사법 조정자를 위한 개별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6월 초, 위원회는 시장에게 행정 명령에 의거한 조정자 직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뉴욕시가 행정 재판소의 준사법적 업무를 위한 행동 또는 윤리 강령을 행정법 판사와 청문회 간부 전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윤리 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해명 요청에 따라, 특정 조항이 해당 윤리강령과 향후 개정안의 공포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용한 정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있었던 토론의 결과로서,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보고 체계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부기관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창설의 목적은 뉴욕시로 하여금 특정 현안으로 부터 한걸음 물러나서, 입법 및 행정 부서의 일상 업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보고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고 행정 및 입법부와의 협조 하에 운영될 공개 보고 관련 위원회의 창설이 정부 기관 운영과 공공 책임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유용한 의견들이 수집되었으며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고자 초기 제안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구성이 시장의 영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원회는 시장이 3명의 일반 구성원 임명 시 자문위원회의 조언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위원회에 의한 모든 개별 결정 사항을 반복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자 자문위원회의 조치에 가해졌던 90일 유예기간을 없앴으로써 자문위원회가 언제든지 지방법규에 따라 요구사항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된 위원회가 보고서 준비나 자문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신설 또는 복구된 요구 사항을 철회하기까지 3년의 “비간섭” 기간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위원회가 8년마다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으로 판단된 경우 스스로 해체하도록 하는 독특한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